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1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9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4일,
김영한 의원외 12명
- 나. 회 부 일 자 : 2014년 11월 1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57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
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한 의원)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, 세부적으로는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하고 “완료”를 “마치다”로 하며 “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려는”으로 하고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 “과다하게”를 “지나치게 많

이”로 하고 “귀책사유”를 “책임질 사유”로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제안 배경 및 개요

-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1) 자구수정(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3항)

- 안 제5조제1항중 “완료한”을 “마친”으로 변경하였으며, 안 제6조제3항중 “수행하고자 하는”을 “수행하려는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2) 자구수정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(안 제7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)

- 안 제7조제1항제3호중 “행정안전부의”를 “안전행정부의”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미리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나,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안전행정부”는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안 같은 조 제3항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변경하도록 하고, 안 같은 조 제4항중 “과다하게”를 “지나치게 많이”로 하며, “귀책사유가”를 “책임질 사유가”로 각각 변경함.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,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안전행정부”는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수정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수정안의 요지

1. 수정 이유

-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행정안전부”가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,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수정 주요 내용

- 가.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변경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1항제3호)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12월 18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행정안전부”가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,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변경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1항제3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검사·시험성적서의 발급)</p> <p>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·시험을 <u>완료</u>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·시험성적서(이하 "성적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검사·시험성적서의 발급)</p> <p>① ----- -----<u>마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5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(개정안과 동일)</p>
<p>제6조(연구용역사업의 수행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<u>수행하고자 하는</u>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연구용역사업의 수행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수행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	<p>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연구원에 검사·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~2. (생략)</p> <p>3. 용역사업 수수료 : 인건비, 자재비, 그 밖의 경비 등 <u>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</u></p>	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<u>안전행정부의</u>----- -----</p>	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<u>행정자치부의</u>----- -----</p>

예정가격 작성요령」에
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
에 따라 산정한 금액

② (생략)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
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
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
수 있다. 이 경우 수입증
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
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
시 수입증지 조례」 제3
조의2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
하게 징수한 때 또는 의
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
부득이한 사유로 의뢰
사항이 취소된 때에는
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
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
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따라 -----

④ ----- 지나치게
많이-----
-----책임질 사유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완료한”을 “마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중 “수행하고자 하는”을 “수행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조중 “과다하게”를 “지나치게 많이”로 하고 “귀책사유가”를 “책임질 사유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검사·시험성적서의 발급)</p> <p>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·시험을 <u>완료한</u>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·시험성적서(이하 "성적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연구용역사업의 수행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<u>수행하고자 하는</u>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연구원에 검사·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용역사업 수수료 : 인건비, 자재비, 그 밖의 경비 등 <u>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」</u>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<u>의하여</u>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 제3조의2에 따른다.</p>	<p>제5조(검사·시험성적서의 발급)</p> <p>①----- -----<u>마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연구용역사업의 수행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수행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행정자치부의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④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또는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-----지나치게 많이-----
-----책임질 사유가-----

-----.

<수정안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·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검사·시험"이란 검사·시험·분석·검정·감정·측정·진단·조사·연구를 말한다.

제3조(검사·시험의뢰)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(이하 "연구원" 이라 한다)에 보건·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·시험의뢰서와 검사·시험용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검사·시험의뢰의 불응)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·시험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해당 검사·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한 자(이하 "의뢰자"라 한다)에게 통지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청, 질병관리본부,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·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.

제5조(검사·시험성적서의 발급)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·시험을 **마친**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·시험성적서(이하 "성적서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성적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연구용역사업의 수행) ① 원장이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검사·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(이하 "용역사업"이라 한다)을 의뢰받

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에 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(이하 "다른 연구기관 등"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단,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연구원에 검사·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1. 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 :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2. 성적서 발급·재발급 수수료 : 1,000원 이상 2,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3. 용역사업 수수료 : 인건비, 자재비,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」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

②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 제3조의2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때 또는 의뢰자의 책임질 사유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면제)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경우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검사·시험을 의

퇴하는 경우

3.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사·시험을 의뢰하는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정보통신망”을 “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 수입증지”를 “시 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제3조(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.